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목 차>

1.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기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노재준
	담당부서 (과)	항공운항과		직급	항공주사
	국장	유경수		연락처	044-201-4270
	과장	강정현		이메일	jjnoh@mail.go.kr

2025. 11. 04. 작성

항공안전정책관

유경수

(인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기간													
	2.규제조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62조													
	3.위임법령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11.19~2025.12.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시행규칙 제262조제2항제3호에서는 항공사가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변경(이하 안체변)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사 운항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변경검사 준비·보완 및 국토교통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안전 확보에 제약 사항이 있음. - 변경검사 미통과 시 운항개시 불가로 인해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 신청기한을 현실화(5일→30일) 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대상 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2항제3호 ○ 개정 내용: - (현행) 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 (개정) 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항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이를 통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항공사의 자료 준비 및 보완조치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피수검자) 항공운송사업자(국적 항공사) ○ 이해관계자: (수검자) 국토교통부, (이용자) 항공권 예약 승객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항공운송사업자(국적 항공사)</td><td>12개 항공사</td></tr><tr><td>관련기관</td><td>정부기관</td><td>국토교통부, 3개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td></tr><tr><td>이해관계자</td><td>이용자</td><td>4,234</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국적 항공사)	12개 항공사	관련기관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3개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	이해관계자	이용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국적 항공사)	12개 항공사													
관련기관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3개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													
이해관계자	이용자	4,234													

	9.규제목표	○ 도입목표: 항공사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절차의 내실화를 통해 운항안전 확보 및 이용자 피해 예방 ○ 기대효과 - 항공사의 안체변 검사 및 보완 기간 확보로 검사 품질 향상 - 운항개시 지연·취소로 인한 승객 피해 예방 - 정부의 검사 행정 효율성 및 업무 일관성 제고 - 항공사 내부 안전관리(SMS) 수준 향상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항공사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 확보 -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항개시 지연·수익 손실 방지 ○ 정부(국토부·지방항공청) - 심사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 일관성 확보 - 운항개시 취소 등 민원·행정 부담 감소 ○ 이용자(승객) - 별도 비용 없음 - 운항취소 위험 감소로 예약 안정성 제고 - 항공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적용대상 아님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생략)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체계 변경 사유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u>5일</u>	3. ----- ----- <u>30일</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시행규칙 제262조제2항제3호에서는 항공사가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변경(이하 안체변) 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사 운항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변경검사 준비·보완 및 국토교통부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안전 확보에 제약 사항이 있음.
- 변경검사 미통과 시 운항개시 불가로 인해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 신청기한을 현실화(5일→30일)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1) (대안 ①) 현행 유지(운항개시예정일 5일)

- (내용) 기존과 같이 항공사가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을 유지하는 방안
- (검토 결과) 현행 유지 시 행정적 단순성은 있으나, 항공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

(2) (대안 ②) 신청기한을 10일~15일로 완화

- (내용) 운항개시예정일 5일을 10일 또는 15일로 연장하는 중간대안
- (검토 결과) 일부 완화 효과는 있으나, 안전확보·운항안정성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효과가 제한적임

(3) (대안 ③) 신청기한을 30일로 연장 (선택안)

- (내용)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 → 30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신청하도록 개정
- (검토 결과) 대안 ①(현행 유지) 및 ②(10~15일 연장)은 안전확보 및 이용자 피해 예방에 실효성이 낮음. 대안 ③은 항공사의 행정적 부담은 소폭 증가하나, 항공안전 확보·이용자 피해 예방·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며, 실무상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임. 따라서 대안 ③(30일 연장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적항공사	수시로 회의 등을 통한 건의	신청기한 변경	관련 법 개정 추진
정부 감독관	수시로 내부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제안	신청기한 변경	관련 법 개정 추진

3. 규제목표

○ 항공운항 안전성 제고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기한을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시, 항공사가 필요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변경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 운항 개시 이전에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운항안전 수준을 강화함

○ 항공이용객의 권익보호

- 검사 미통과로 인한 운항개시 지연 또는 취소 등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함
- 운항개시 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이용객의 신뢰도 및 서비스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확보
 -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변경검사 및 행정처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품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항공사 또한 사전에 운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운항 체계 변경검사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한 일정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기한을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항공기 운항개시 전 안전확보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 미통과로 인한 운항취소 및 이용객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신청기한 연장)은 다음 측면에서 비례성과 타당성을 충족함.

- 필요성 측면

현행 5일 기한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준비·보완하기에 지나치게 촉박하여, 실제 현장에서 검사 서류 미비나 보완조치 지연 등으로 운항개시 일정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비해 30일 기한은 항공사가 충분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기간으로 판단됨.

- 균형성 측면

본 개정으로 인한 항공사의 추가적 행정 부담은 운항개시 일정 조정 및 내부 승인 절차 조기 착수 정도에 그치며, 새로운 비용이나 과도한 규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반면, 이로 인해 항공운항 안전 확보 및 이용객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현저히 크므로, 공익 대비 부담의 균형성(상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적합성 측면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 확보가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며, 추가 인력·예산 투입 없이 제도운영만으로 개선이 가능함.

따라서 목적(항공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비침해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 (결론) 본 개정은 항공안전 확보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인 신청기한 30일 연장이 필요성·적합성·상당성을 모두 충족하는 비례적 타당성이 높은 규제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1.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경미함. 본 개정은 단순히 검사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제도적 조치로, 항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시설투자·인력운용 변화 등이 없음.
2. 행정절차 일정만 조정되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음.
3. 중소기업의 경쟁력·시장 진입에 영향 없음
4. 신청기한 연장은 모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사업자의 진입·경쟁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확인 불가

○ 타법사례

철도 분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내용) 철도운영기관은 운행 개시 90일 전까지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사전협의는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 전) → 서류검사·현장검사·보완 등 절차
- (의미)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시 전 충분한 심사·보완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보. 항공의 '운항개시 전 사전검사'와 목적·구조가 동일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본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 30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행정기한 조정 성격의 제도이며, 신규 의무 부과나 기술적 요건 강화가 아니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은 이미 변경검사 접수·검토·현장점검 기능을 수행 중이며, 신청이 분산됨에 따라 심사 집중도 완화 및 행정 품질 향상 효과가 예상되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은 단순한 신청기한 조정에 해당하며, 새로운 시설투자, 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인건비 등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매우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 변경검사 신청기한을 30일 전으로 연장하여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절차를 내실화하고, 운항개시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는 기한이 과도하게 짧아 항공사가 검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검사 미통과 시 운항개시 지연으로 승객 피해 및 항공안전 저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개정으로 인해 항공사는 검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되어 검사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도 심사 일정 분산·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가 기대됨.
- 피규제자(항공사)의 추가적 부담은 기존 인력 내 일정조정 수준의 경미한 행정비용에 불과하며, 반면 항공안전 확보, 이용자 피해 예방, 행정효율성 향상 등 편익이 월등히 큰 순편익형 규제개선안임.
- 또한 본 개정은 항공사·정부 모두 준수 및 집행 가능성이 높고, 추가 재정 소요가 없는 행정절차적 개선으로서,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6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항공운송사업자
활동제목	운항개시에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내부 절차 조기 이행
비용항목	신청서 및 입증자료 작성·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및 사무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이 절차는 기존에도 수행해오던 법정 의무사항이며, 단지 일정이 앞당겨지는 형태로 변화할 뿐 신규 인력 투입, 장비 구입, 추가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항공운송사업자
활동제목	운항개시에정일 5일 → 30일 연장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준비기간 확보
편익항목	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 리스크 감소 및 운항개시 지연·취소로 인한 항공권 환불·대체운항 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청기한 연장으로 항공사가 충분한 기간(약 4주) 동안 변경검사 서류를 검토·보완할 수 있어, 현행 5일 제도하에서 발생하던 검사 미통과 및 일정 지연 위험이 현저히 감소함. - 운항개시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대체편성, 승객 보상 등 직접 손실이 감소하며, 이는 항공사 재무적 부담 완화로 이어짐.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항공운송사업자
활동제목	운항개시에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내부 절차 조기 이행 및 일정관리 강화
비용항목	내부 행정일정 조정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조직운영 부

	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청기한이 5일에서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항공사는 신규 노선 개설 시 운항계획 승인, 정비·운항관리, 안전운항 체계 변경자료 준비 등의 내부 절차를 최소 3~4주 전부터 조기 착수해야 함. - 이에 따라 운항관리부서, 안전관리부서, 정비부서 등 관련 인력이 조기 회의를 진행하거나, 일정 변경에 맞추어 내부 결재·검토 일정을 조정해야 함. - 다만 이는 기존 인력 및 절차 범위 내에서의 일정 조정 수준이며, 추가 인력 채용이나 외부 용역 비용이 수반되는 수준은 아님. - 따라서 실질적 금전비용보다는 행정적·시간적 부담 형태의 간접비용으로 한정됨.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항공운송사업자
활동제목	운항 일정의 안정화 및 항공사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편익항목	항공사 신뢰도 향상 및 내부 리스크관리 등 안전문화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운항개시 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항공권 예약 승객의 불편 최소화 및 서비스 신뢰도 제고로 이어짐. - 안전운항체계(SMS)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며, 항공사 내부 안전문화 및 자율 리스크관리 수준이 향상.

②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항공이용객)
활동제목	항공사 운항개시예정일 변경(5일 → 30일)에 따른 노선 개설 일정 조정 영향
비용항목	신규 노선 취항 일정 확정 지연 가능성 및 항공권 예매 일정 변동에 따른 잠재적 불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운항개시예정일 30일 전 신청으로 인해 일부 항공사의 신

	규 노선 개설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항공권 판매 개시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행정절차에 해당함. － 실제 항공권 구매·예약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노선만 판매되므로 일반 이용객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직접 불편이 발생하지 않음.
--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항공이용객)
활동제목	운항개시예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항공운항 안정성 및 이용자 피해 예방 효과
편익항목	항공기 운항 안전성 향상 및 항공편 취소·지연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청기한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항공사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검사 불합격 및 운항개시 지연 가능성이 크게 감소함. － 이에 따라 항공권 예약 이후 운항취소·지연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 환불, 일정 변경 등의 피해가 예방됨.

③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항운영자 및 지상조업사 등
활동제목	운항개시예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지상조업 계약 및 운항지원 일정 조정
비용항목	지상조업사·급유사 등 외부 용역 계약의 조기 체결 및 행정 절차·계약관리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항공사가 운항개시 30일 전부터 변경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 준비 과정에서 실제 운항환경(조업 절차, 급유, 정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항공사는 지상조업사, 급유업체 등과의 운항지원 계약을 기존보다 앞당겨 체결해야 하며, 일부 조업업체는 계약 검토·행정처리가 조기 진행됨. － 그러나 조기 체결은 단순히 일정이 앞당겨질 뿐 계약 횟

	수 ·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 추가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음.
--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공항운영자 및 지상조업사 등
활동제목	운항개시예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항공운항 일정 안정화 및 조업계획 효율성 향상
편익항목	항공사 운항일정의 조기 확정으로 인한 지상조업 · 급유 · 정비 일정의 예측가능성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항공사가 30일 전부터 변경검사 절차를 이행하면서, 운항개시 일정과 지원요구사항을 조기에 확정함에 따라, 지상조업사 · 급유사 등은 사전 조업계획 수립 및 인력배치 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검사 미통과나 일정 지연이 줄어들면 운항취소 · 지연으로 인한 대기 · 비상조업 등의 비효율적 운영시간이 감소하여 간접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

④정부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활동제목	운항개시예정일 5일 → 30일 변경에 따른 변경검사 행정관리 일정 조정
비용항목	변경검사 접수 및 검사 일정의 분산 · 조기화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청기한이 30일로 연장되면 항공사들이 보다 조기에 변경검사를 신청하게 되므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은 검사일정 · 인력배치 · 심사계획을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함. – 다만, 검사 기간이 길어 피크부하가 완화되고, 업무가 전반적으로 균등 분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정관리 및 행정계획 조정에 따른 소규모 행정비용 증가,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상쇄될 것으로 평가됨. – 추가 인력이나 예산 소요는 없으며, 기존 조직과 예산 범

	위 내에서 처리 가능함.
--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활동제목	변경검사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편익항목	변경검사 준비기간 확대에 따른 검사 품질 향상 및 항공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신청기한이 연장됨으로써 행정기관의 검토·검사 품질이 향상됨. - 운항개시 직전 집중되는 신청이 줄어들어 업무 과부하가 완화되고, 심사일정 분산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이 개선됨. - 결과적으로 항공안전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안전감독 기능 강화라는 공익적 편익이 발생함.

⑤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항공이용자 외의 사회 구성원)
활동제목	항공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산업 운영체계 변화의 간접 영향
비용항목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없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부 항공사의 내부 행정비용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이는 기업 내부에서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소비자나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사실상 없음. - 제도개선 관련 대국민 홍보, 안내자료 제공 등은 정부의 일반 행정활동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 국민이 부담할 금전적·시간적 비용은 0원 수준으로 평가됨.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항공이용자 외의 사회 구성원)
활동제목	항공운항 안전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신뢰도 및 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편익항목	② 항공사고·지연 등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인한 국가 이미지

	및 산업 신뢰도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국민 전체가 항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항공산업은 국가 기반교통이자 국제 이미지와 직결된 공공재 성격을 지니므로, 안전관리 강화는 국민의 신뢰자산으로 작용함.